예 산 총 칙

2018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72,573,563	14,177,207
일반회계	361,182,132	10,835,464
특별회계	111,391,431	3,341,743
공기업특별회계	30,979,534	929,386
상수도공기업	18,275,078	548,252
하수도공기업	12,704,456	381,134
기타특별회계	80,411,897	2,412,357
이원지구간척사업	5,973,100	179,19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2,484,000	1,574,520
의료급여기금운영	520,708	15,621
주민소득지원사업	1,800,000	54,000
만리포집단시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735,000	82,050
관광경영개발사업	127,000	3,810
태안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594,169	17,825
동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45,976	1,379
수산자원조성	16,010,000	480,300
도시기반시설	121,944	3,65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2,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비, 동일부서에서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